

##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

( 류동철 의원 발의 )

「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월 19일

고흥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

2. 제정이유

- 『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』에 의하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우회원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2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4. 예고기간

- 2021. 1. 19. ~ 2021. 1. 25. (7일간)

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. 1. 25.(월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- 붙임 1.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##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경우”이라함은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경우회”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“고흥군 재향경우회”(이하 “재향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사업 등)**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
3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4.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**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**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**제5조(정산보고 등)**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고흥군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불법 부당행위 확인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